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하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정비(안 제22조제4항)

- 1) 굴착행위 등 단기간에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도모

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용도 확대(안 제40조의2)

- 1) 먹는샘물등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등 먹는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먹는샘물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규정(안 제40조의3)

- 1) 먹는샘물등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변경하고, 부과금액을 정함

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시기 규정(안 제40조의4)

- 1)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를 정하고, 먹는샘물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분기별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자별 산출방법 규정(안 제40조의5)

- 1) 가산금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바.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0조의6, 안 제40조의7)

-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던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기 반영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7조, 제7조의3”을 “이 법”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를 “법 제30조의2제4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

4.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6.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7.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 지정 및 운영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를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30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샘물등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가 취수한 샘물등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⑤ 제4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

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1세제곱미터 당 1,320원으로 한다.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6(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

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 시·도지사

제40조의7(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40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③ (생략)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이 법 ----- ----- ----- ----- ----- ----- -----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 제11호-----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제26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u>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u>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u>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u>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 비용의 지원</u> 4.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의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6.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7.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 지정 및 운영 8. (현행 제3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u>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u>-----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30조의3제2항</u>----- ----- -----
---	---

려해야 한다.

1. ~ 4. (생 략)

③ (생 략)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취득한 샘물등

가.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
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
를 사용하는 자가 취득한
샘물등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
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
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
샘물등의 제조업자”라 한다)
가 취득한 샘물등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
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
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
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

<신 설>

<신 설>

<신 설>

물등

⑤ 제4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플등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1세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6(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신 설>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 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 : 시장·군수·구청장

2.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 : 시·도지사

제40조의7(부담금의 징수유예 등의 통지절차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

	<u>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②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40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u> <u>③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하여야 한다.</u> <u>④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에

	<u>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u> <u>과대상 및 부과금액</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83